



보 상 계 획 공 고

평택시 고시 제2024-210호(2024.05.31.)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평택시 고시 제2025-290호(2025.06.26.)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6-131호(2026.04.10.)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 된 「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」 내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▣ 사업의 명칭	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
▣ 사업시행자	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(주) 대표이사 이승복
▣ 사업의 위치	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55-5 일원
▣ 사업의 면적	483,761㎡
▣ 사업의 기간	2024년 5월 31일 ~ 2027년 12월 31일

2. 보상대상 토지·물건 등 조서의 내역 : 세부내역 열람장소 비치 및 개별통지

- ▣ 토지·물건 조서의 상세내역은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고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,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
3. 열람장소

- ▣ 사업시행자 : 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(주)
보상업무 담당 : (주)지평토지보상 (이진섭 팀장, 박승국 과장)
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, 638호 (고덕동, 에이스퍼스트고덕) (☎ 031-651-7279)
- ▣ 평택시청 반도체AI과
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43-7 (합정동) (☎ 031-8024-3461)

4. 열람기간 등

▫ 열 람 기 간	2026. 04. 16. ~ 2026. 04. 30.
▫ 이 의 신 청	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·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,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 또한, 열람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5. 보상시기 : 추후 개별통지

- 개인별 토지·물건의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 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합니다.

6. 보상방법 및 절차

▫ 보상금 산정 및 통지	보상액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 (보상액의 산정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(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) 등에 의거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개별 통지합니다.
▫ 보 상 절 차	보상계획공고 ⇨ 감정평가 ⇨ 보상액 산정 ⇨ 손실보상협의 ⇨ 보상계약 체결 ⇨ 소유권 이전 및 권원확보 ⇨ 보상금지급
▫ 보상금 지급	보상계약 체결 · 소유권 이전 · 권원 확보 이후 소유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합니다.
▫ 협의불성립 시	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처리합니다.

7. 기타사항

-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공고문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나,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, 주소·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,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
-
- 보상협의회는 현재 설치·운영 중으로 추가로 설치·운영하지 않으며, 기존에 수립된 의견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
-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(보상액의 산정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)에 의거,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각각 추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,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.
-
-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상 협의 요청 시에 손실보상 협의요청 문서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.
-
- 보상대상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, 지적측량 불일치,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면적 변경 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보상대상 편입조서에 토지 및 물건이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
- 아울러,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사무소(☎ 031-651-72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

2026년 04월 16일

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(주)



보상대상토지

고덕면 방축리

167 168 308 309 310 714

지제동

805 806 809-4 813-4 814-4 909 910-2 911 931-1 931-2

931-3 931-4 932 933 934 935 938 942-1 942-13 942-15

942-16 942-17 942-18 942-25 943 943-1 943-2 943-3 944 948

1026 1028 산50 산50-1 산50-3

보상대상물건 등

사업 편입 토지 내 있는 물건 등 일체
